

[서식 예] 채권추심신고서

채 권 추 심 신 고

사 건 2000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자 000

채무자 ◇◇◇

제3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하여 20〇〇. 〇. 〇.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명령결정금액 금 〇〇〇〇원 가운데 금 〇〇〇원을 추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00. 0. 0.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집행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기 타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한 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다 신고를 하여야 함.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청용되지 않음(민사집행법 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가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기 수심의 신고가 있는 때에서 사하여 민사집행법 제159을 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합일부가 변제된 경우에는 집합인부가 변제된 집합인부가 집합인부가 변제된 집합인부가 변제된 집합인부가 집	루 또는 배당요 공탁하고 그 리 대상인 채권 입채권이 압류 재권자들에 의한 제247조 제1항 년자들의 배당요 네 됨. 는 집행법원은 조 제2항, 제3학 행력 있는 정본 그 취지를 집행	구가 있었을 사유를 신고하 의 일부만이 된 경우에는 된 배당요구는 제2호). 따라 구가 없으면 추심금의 충 항에 준하여 을 채무자에 력 있는 정본	때에는 채권 하여야 함(민 추심된 경우 매 추심시마 더 이상 허 서 추심신고 추심채권자 당관계를 조 집행채권 전 게 교부하고,